

# ICTI

## 정보통신 산업동향

2013. 7

정보통신시설의 공사비산정기준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구 외





『정보통신산업동향』은 ICT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http://www.kici.re.kr>)에서 발간하는 이슈 및 동향 분석 연구지입니다.



# ICT 정보통신산업동향

## 정보통신시설의 공사비산정기준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구 외

### | 목 차 |

[기 고] 정보통신시설의 공사비산정기준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구	①
원가관리실 김 영 삼 선임연구원	
[동향 1]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개정	⑱
기획관리실 안 철 모 실장	
[동향 2] 중소기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	⑳
기획관리실 안 철 모 실장	
[동향 3] 「전선공동구 특별법」 제정 추진 동향	㉘
기획관리실 안 철 모 실장	
[동향 4]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	㉟
기획관리실 안 철 모 실장	



## 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서병기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보통신산업동향」은 ICT산업과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이슈를 정리·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ICT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의 원가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시설의 공사비산정기준 신뢰성확보에 관한 내용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개정내용, 건설분야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수주기회확대를 위한 정책, 전선공동구 특별법 제정 추진동향,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의 주요정책 중의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있어서도 참고할만한 정책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ICT분야의 제도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을 키워 스마트시대를 선도하고 미래의 창조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Think-Tank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3년 7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서 병 기





# 정보통신시설의 공사비산정기준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ensure reliability of the  
construction cost estimating standar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원가관리실 김영삼 선임연구원(yskim@kici.re.kr)

## 요 약

우리나라 정보통신시설의 공사비산정기준은 대부분 지난 1970년 시행한 표준품셈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이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제정되고 있음에 따라 실제 투입하는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하고, 건설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공가격을 반영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및 전기공사에서 이미 시행중인 실적공사비 방식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공사비산정기준을 도입하려는 시점에서 표준품셈 제·개정 업무절차와 실적공사비 관련 입찰제도의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안함으로써, 정보통신시설 공사비산정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Abstract

In Korea since 1970, the budget pr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construction is calculated based on the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However,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representative and universal kinds and methods of constructions, it fails to fully reflect the reasonable construction cost currently used in the construction marke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intends to introduce the same estimation system of historical construction cost method as those already used in construction and electric industries. At this time of trying to introducing the new estimation system, we propose the reasonable business processes for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and the improvement scheme to the bidding system for the historical construction cost, which would considerably make contributions to a proper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and the reliability of the estimation method.

Keywords: historical construction cost,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budget price, the budget price calculation process

## I. 서론

우리나라 정보통신시설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주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된 공공 시설공사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발주자나 시공하는 시공업체 모두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두 가지 큰 축은 표준품셈을 활용한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 방식이다.



지난 1970년에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43년간 활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원가계산방식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유일한 기초자료로서의 위치를 굳히며 왔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제정되므로, 다양한 공사환경과 새로운 시공방법의 출현 등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품량의 과다에 대한 적정성 논란 등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으로서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실적공사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건설공사는 1995년 국가계약법에 실적공사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품셈의 폐지를 주장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강력한 요구로 2004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1]-[2]. [1]에 의하면 영국,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방식은 표준품셈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 건설산업의 예산절감 등을 사유로 국내 도입되어, 외형상 과거에 비해 공사비 산정체계가 선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계약제도의 입찰 및 낙찰방식 등의 환경으로 인해 공사비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의 실적공사비는 2015년까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공사규모가 매우 큰 건설공사와 대비하면 정보통신시설공사의 공사비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이다. 정보통신공사의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에 관해 진행된 제한적인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다.

설동화(2003)는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를 도입하기 위한 구성요소 중 정보통신공사의 수량산출기준 체계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3].

김상진(2012)은 정보통신공사 시공기술료 및 기술개발투자비를 표준품셈에 반영하므로써,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4].

김서경(2012)은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구성요소 중 실적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5].

우리나라 정보통신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의 도입 및 관리현황과 예정가격 산정절차 과정 등을 파악·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2.1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

우리나라 표준품셈은 지난 1970년 1월 20일 경제기획원에서 시행되어, 정보통신 부문은 당시 전신·전화역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인 체신부에서 1976년부터 표준품셈을 관리하였으며, 199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표 1>과 같이 매년 평균 65개의 표준품셈 제·개정 관리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6].

<표 1> 정보통신 표준품셈 제·개정 현황

<Table 1> Establish & revision condition of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연 도	제 · 개정	연 도	제 · 개정
1998년	11개 항목	2006년	46개 항목
1999년	60개 항목	2007년	100개 항목
2000년	150개 항목	2008년	49개 항목
2001년	43개 항목	2009년	73개 항목
2002년	55개 항목	2010년	79개 항목
2003년	57개 항목	2011년	40개 항목
2004년	61개 항목	2012년	60개 항목
2005년	92개 항목	-	-
합 계	976개 항목		

2013년 7월 현재, 표준품셈 관리기관은 <표 2>와 같이 중앙부처로부터 지정되어 공사분야별로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표 2> 표준품셈 관리기관

<Table 2> A management agency of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공사분야	관리기관	관리부처
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전기	대한전기협회	산업통산자원부

## 2.2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구성체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품셈 공통기준인 4개장(제1장, 제2장, 제9장, 제10장)과 정보통신공사의 분류체계를 6개장(제3장~제8장)으로 구분하고 있다[6].

<표 3> 정보통신 표준품셈 구성현황

<Table 3> The composition of the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차 례	제 목	항 목
제1장	적 용 기 준	30개
제2장	단 위 표 준	2개
제3장	선로시설공사	66개
제4장	교환시설공사	14개
제5장	전송시설공사	96개
제6장	통신용전원공사	21개
제7장	네트워크 및 철도통신·신호시설공사	35개
제8장	시설유지보수	23개
제9장	기계화 시공	2개
제10장	기계경비 산정	4개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공사 분류체계는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공사의 종류와 시공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공종분류체계로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방식인 수량 산출기준에서 제시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정

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공사의 종류에서 제시하고 있다.

### 2.3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문제점

표준품셈의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것은 예정가격산정시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된 예정가격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요소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첫번째로, 표준품셈을 활용하는 원가계산방식의 구조적인 신뢰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원가계산방식시 활용되는 표준품셈의 품량, 시중노임, 자재단가 등이 모두 적정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품량의 경우 적정한 실제 투입 노무량이 반영되어 적절한 현장실사 절차한 의해 측정·분석되어 표준품셈에 반영[7]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주된 사항이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시중노임은 1995년까지 정부노임단가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노임단가와 실제 시중노임의 격차가 약 65% 수준으로 괴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8]. 이러한 사유로 1995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면서 품량의 적정성 검토없이 시중노임을 적용함에 따라 품량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자재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물가정보지 등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생산자의 판매희망가격인 생산자공표가격으로 실제 최종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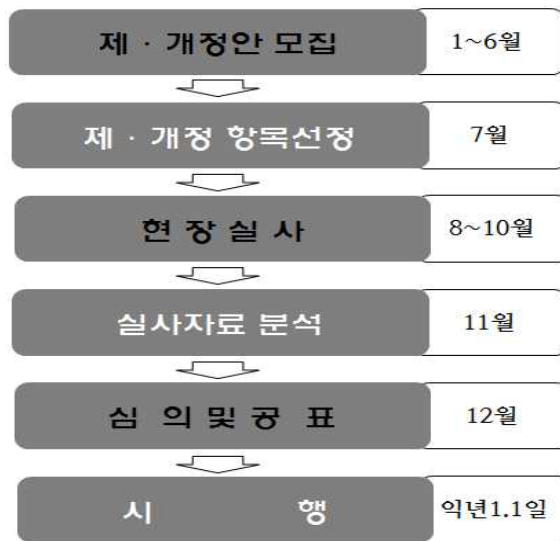
두 번째로, 표준품셈이 조사되고 산정되는 업무절차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기도 하다.

품량은 직접 시공현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작업자가 수행한 작업물량을 측정한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과 명확한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를 [그림 1]과 같이 크게 5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를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선정단계, 실사대상현장 선정

단계(2단계), 현장실사 단계(3단계), 실사자료 분석단계(4단계), 표준품셈 제·개정안 심의 및 공표 단계(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세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9].

[그림 1]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

[Fig. 1] Process for establish & revision of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원가계산방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은 우리나라 계약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본 논고에서는 표준품셈 제·개정 업무 진행절차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림 1]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준품셈 제·개정 업무 절차진행상에서 살펴보면 <표 4>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물론 건설공사를 위주로 한 분석이기에 정보통신공사 측면에서 해당여부를 O, X로 판단해 보았다.

<표 4>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은 건설공사 전문가 델파이기법에 의해 도출하였으며[9],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업무절차와 유사한 항목 및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항목을 “O”로 선택하였다.

특히, 실사현장 선정단계와 현장실사는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로 느끼고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실사는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량을 결

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업무담당자도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현장실사를 주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장실사에 대한 원론적인 지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시공현장의 다양한 환경과 매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통기량의 기술을 보유한 특수작업조를 투입[10]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한다는 것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현장의 특수한 환경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2회 이상의 현장실사를 거쳐 산출평균치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현장을 섭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11]. 왜냐하면 시공업체나 발주자가 품량 결정을 좌우하는 현장실사에 대한 부담으로 장소제공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장실사 결과로서 품량 산정의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는 「세부작업종별총괄표」 작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작업종별총괄표」는 크게 작업 공통시간, 본체공종 작업시간으로 구분하여 작업량과 소요시간, 투입직종 및 인원을 고려하여 단위당 소요품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작업 공통시간은 자재수령 및 안전수칙 교육시간, 작업준비시간(이동 및 개인공구 준비시간 등)과 작업이 끝난 후 작업현장 청소 및 작업일보 작성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표 4>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에 따른 문제점

<Table 4> Problem in the process for establish & revision of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업무단계	문 제 점	해당여부
제·개정 대상항목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표준품셈 제·개정 주기의 적정성 부족</li> <li>○ 제·개정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조사 불명확</li> <li>○ 최종 제·개정 대상항목선정을 위한 판단기준 불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실사대상 현장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현장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사대상 선정기준의 부재</li> <li>○ 실사대상 선정기준의 부재</li> <li>○ 현장조사 기피로 인한 실사대상 현장확보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업무단계	문 제 점	해당여부
현장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사자료의 효과적인 수집을 위한 실사방법의 부재</li> <li>○ 현장실측방법의 불명확</li> <li>○ 서면조사자료의 신뢰성 확보 곤란</li> <li>○ 작업물량 산출방법의 불명확</li> <li>○ 기능공과 조공의 구분방법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li>×</li> </ul>
실사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효데이터 판정기준 부재</li> <li>○ 실사자료의 표준품 산출기준 부재</li> <li>○ 현장실측과 서면조사결과의 반영기준 부재</li> <li>○ 작업상 여유율의 적용기준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ul>
제·개정안 심의 및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셈 제·개정안 심의방법 불명확</li> <li>○ 품셈 제·개정안 공표시기 부적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표 5> 표준품셈 현장실사 조사내용(예시)

<Table 5> Survey sheet of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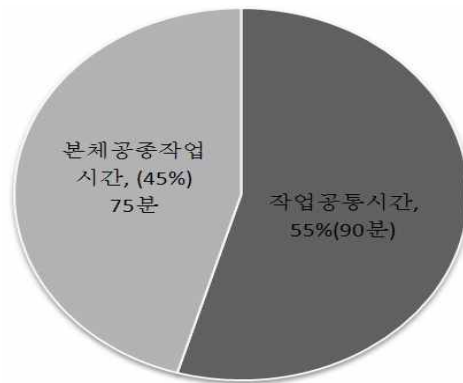
실사항목	UTP Cat.5E 4Pair 포설(구내)				
	단위	작업량	소요시간	시공투입인원	
				직종	인원수
1. 자재수령 및 안전교육 등	식	1	15분	통신 케이블공	1
2. 작업준비	식	1	25분		
3. UTP케이블포설	m	22.5m	75분		
4. 청소	식	1	15분		
5. 현장철수	식	1	20분		
6. 작업일보 작성	식	1	15분		
합 계			165분		

작업 공통시간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요되는 본체공종 작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작업준비 등 본체공정을 위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전체 시간이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실사 당일 소요되는 작업 공통시간만을 측정하여 품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5>의 공동주택의 정보통신공사 총원가에서 직접노무비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UTP케이블 포설 공종의 경우, 작업공통 시간은 90분(품량의 55%)으로 본

체작업시간 75분(품량의 45%)에 비해 오히려 15분(10%)정도 많은 품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작업공통시간 대비 본체공종 작업시간 비율  
 [Fig. 2] Common working time and actual work time of the ratio



이러한 본체공종 작업시간보다 작업공통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측정되어 품량을 산정되는 사유는 전체 공사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실사 당일 측정된 자료에만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상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세부공종이 많음에 따라 새로운 세부공종의 표준품셈 제·개정은 새롭게 출현한 세부공종만을 실사하여 표준품셈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공종의 합산으로 나타나는 예정가격의 직접노무비에는 작업 공통시간이 세부공종 안에 중복적으로 계산되어 결국 본체 공종을 완성하기 위한 시공시간보다 작업 공통시간이 오히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체공종 작업시간의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작업 공통시간을 배당하는 것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정비율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표 3>에 의한 지난 15년간 매년 평균 약 65개의 표준품셈을 제·개정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실사에서 임의로 주어진 시간이 아닌 실제 측정한 세부작업종별총괄표의 작업 공통시간을 추출하고, 작업공통시간의 통계·분석값을 도출하여 활용하여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 공통시간을 본체공종 작업시간의 일정비율로서 제시한다면, 세부공종별로 중복된 작업 공통시간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품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 표준품셈의 거품 논란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는 그간 표준품셈 관리기관에서 수행한 현장실사 데이터(세부작업종별총괄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한 현장실사 데이터를 작업 공통시간의 적정한 비율 산정 등 표준품셈의 제·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III.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 3.1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실적공사비 제도는 표준품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 6>과 같이 건설 및 전기공사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 및 전기공사를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정보통신공사도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발주하기 위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표준품셈을 관리하고 있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2011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였다.

<표 6>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Table 6> A management agency of historical construction cost

구분	정보통신	건설	전기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최초지정	2009년 3월	2004년 1월	2000년 1월
관리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3.2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구성체계

실적공사비는 수량산출기준, 실적단가, 정보통신공사비지수, 조정계수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실적공사비를 활용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소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12].

#### 3.2.1 수량산출기준

수량산출기준은 실적공사비 방식의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부지침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많은 세부공종을 계층적으로 세분화하고 분류함으로써[13], 표준적인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구성 및 기재방법과 각 공종의 작업범위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정보통신공사 수량산출기준지침서는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ci.re.kr)에 게시되어 있다.

#### 3.2.2 실적단가

실적공사비 방식은 과거 수행공사로부터 축적된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단가에 시간차 보정을 통한 실적단가를 기초로 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다. 즉, 실적단가는 공사비의 투명성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고 있다. 2013년 2월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는 구내통신분야 301개 공종을 축적 중이다.

#### 3.2.3 정보통신공사비지수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정보통신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에 대한 가격변화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계학적 수치이다.

실적공사비 방식은 과거 수행한 공사의 실적자료를 차기 시설공사에 활용하기 때문에 자료를 축적 하는 시점과 활용하는 시점간의 물가 및 임금변동을 반영[14]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비지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설정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가중치 자료와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와 시중노임의 가격자료로 산정하는데 라스파이레스 수정산식(Modified Laspeyres formula)을 활용하였다.



라스파이레스수정산식(L') = (1)

$$\frac{\sum p_0 q_0 p_t / p_0}{\sum p_0 q_0} = \sum w \frac{p_t}{p_0} / \sum w$$

(p: 가격 q: 수량 w: 거래액가중치 o: 기준시 t: 비교시)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실적단가의 시간차 가격을 보정하는 역할과 미래의 정보통신공사 규모 추이를 추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14], 현재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 3.2.4 정보통신공사 조정계수

실적공사비 방식에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효율이 없으므로 원가계산방식의 간접공사비와 거의 동일한 간접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조정계수가 활용되며,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표되고 있다.

## 3.3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문제점

우리나라의 실적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조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활용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계약단가’는 우리나라 계약제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3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에 의해 계약단가가 결정되고 있다. 적격심사제도는 공사금액별로 공사에정가격의 79.995%~87.745%의 낙찰상한선에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적격심사제도에 의해 하락된 공사비가 계약단가로 인위적으로 형성되고 있어 ‘시장 시공가격의 논란’과 ‘지속적인 공사비 하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 3.3.1 시장 시공가격의 논란

실적공사비의 도입취지는 실제 시공현장에서 형성된 시공가격(이하 ‘시장 시공가격’이라 한다.)을 예정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시공가격을 산정하려는 데 있다. 건설공사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적공사비는 시장 시공가격을 ‘계약단가’로 확정하고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 시공가격을 ‘계약단가’로 보

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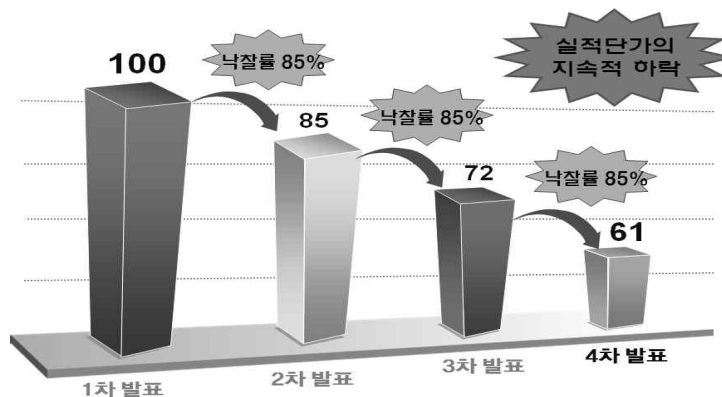
우리나라 적격심사제도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입찰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계약단가를 결정하는 총액입찰방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시공가격이 아닌 입찰제도하에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시공가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건설공사에서 도입된 실적공사비는 본래 취지인 시장 시공가격을 도입하여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공사비 절감방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물론, 2004년 표준품셈의 거품론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되어 전격적으로 건설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도입되었지만, 실적공사비 방식이 지향하는 시장 시공가격에 대한 성격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장 시공가격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다고 볼수 있다.

### 3.3.2 실적공사비의 지속적 하락

우리나라 실적공사비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에 의해 [그림 3]과 같이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약 15% 하락된 계약단가를 축적하게 되고, 하락된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이 되어 다시 적격심사제도에 의해 낙찰되면 다시 약 15%가 하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5].

[그림 3] 실적단가의 지속적 하락  
[Fig. 3] Continuous decline in historical unit price





이는 외국의 입찰제도와는 달리 입찰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찰 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우리나라 입찰제도와 맞물려 상생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표 7>과 같이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Table 7> Law on contracts for the country revised

현 행	개 선(안)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 가격의 결정) ②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b>계약단가</b> 를 활용하되(이하생략)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 가격의 결정) ②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b>설계단가</b> 를 활용하되(이하생략)

<표 7>의 개선(안)과 같이 ‘계약단가’ 대신 ‘설계단가’로 변경할 경우 첫째, 적격 심사제도에 의한 낙찰률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실적공사비의 구조가 지닌 지속적 공사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입찰제도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복잡한 예정가격 산정을 실적공사비 방식의 특징인 간소한 절차로 적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방식인 표준 품셈과 실적공사비의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점을 마련하여 공사비산정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2.3절과 3.3.2에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업무절차 개선방안과 실적단가 축적시 설계단가를 축적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두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표준품셈의 본체공종 작업시간에 대한 작업 공통시간의 일정비율을 반영하는 방

안과 실적공사비 단가축적 근거를 ‘계약단가’에서 ‘설계단가’로 변경하는 개선방안은 건설공사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정보통신시설공사의 공사비산정기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표준품셈 현장실사 자료의 비공개로 본 연구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작업 공통시간에 대한 비율은 현장실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통계·분석과정을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공사 시장규모는 12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어울리는 정보통신시설공사의 공사비산정기준에 대한 많은 연구와 합리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시점인 것이다.

#### 참고자료

- [1] 김원태·최석인·이복남, “건설공사 공사비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년 10월.
- [2] 최석인·이복남·이승우·최민수, “실적공사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년 10월.
- [3] 설동화·이광희, “정보통신시설공사 수량산출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논문지, 제2권, 제4호, pp.52~63, 2003년 12월.
- [4] 김상진, “정보통신공사 시공기술료의 표준품셈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년 8월.
- [5] 김서경,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프로세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지, 제10권, 제6호, p.178, 2012년 6월.
- [6] 2001년~2013년 정보통신 표준품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13년 1월.
- [7] 손창백·홍성호·김화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조사체계의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 제26권, 제6호, p.159, 2010년 6월.
- [8] 이덕찬·손창백·신현식, “정부표준품셈의 현실화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 제12권, 제2호, p.665, 1992년 10월.
- [9] 이동은·손창백, “건설 표준품셈 제·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 제27권, 제6호, pp.136~137, 2011년 6월.



- [10] 하기주·최민권·이동렬·하민수·하재훈·김진환, “건설공사의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을 위한 작업조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구조계, 제29권, 제1호(통권 제53집), p.661, 2009년 10월.
- [11] 김용우·신원상·손창백, “표준품셈의 신뢰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 제2권, 제1호, 통권 제20집, pp.188~189, 2011년 3월.
- [12]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부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연구”, 2011년 12월.
- [13] RS Means, Heavy Construction Cost Data 21st Annual Edition, 2007, R.S Means Company Assemblies Cost Data 2009.
- [14] Fleming, M. C. and Tysoe, B. A., “SPON’s Construction Cost and Price Indices Handbook”, E & FN SPON, 1991.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 2013. 6. 24부터 개정고시 시행 -

기획관리실 안철모 실장(acm@kici.re.kr)

### I. 개정배경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련단체로부터 430건의 건의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중 13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2013. 5. 10)에서 확정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애로사항(‘손톱 밑 가시’) 130건 중에 포함된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무조정실의 중소기업 손톱밑 가시뽑기 개선과제로 선정된 바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을 개정 고시하였다.<sup>1)</sup>

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6호, 2013. 6. 24.



## II. 주요내용

### 1. 세무사 및 세무법인에게 기업진단자 자격 부여

종전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회계법인, 경영지도사만이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를 중심으로한 세무사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기업진단자격을 부여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의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게도 기업진단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다른 업종과 겸업하는 사례가 많으며, 겸업업종에 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작은 경우가 많아 회계 전문가에 의한 기업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 산출이 어렵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자격 확대방안이 선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업계의 회계업무 대부분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세무사 및 세무법인에게도 기업진단자격을 부여한 것이다.<sup>2)</sup>

따라서 향후에는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간에 경쟁체제가 됨에 따라 업계의 기업진단비용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기업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종전까지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진단한 서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경유토록 규정하여 기업진단결과에 대해 관련단체가 진단 정보를 갖도록 함으로써 진단자의 성실진단을 유도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고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제3조(진단자)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및 공사업등록관련 기관에서 진단자가 속한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이는 진단자가 속한 단체를 경유하는 종전 절차를 관련단체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강화하면서<sup>3)</sup> 정부, 시·도지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 진단보고서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요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에게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도록 하여 기업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진단자가 속한 관련단체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도록 하였다.<sup>4)</sup>

두 번째는 진단자와 진단업체간에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 해당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진단자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진단보고서를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속한 협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특수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업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다. 또한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진단을 받는 업체의 임원 또는 사용인(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 포함)인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이해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진단불능」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sup>

### 3. 유가증권평가시 조합출자금 담보 대부금액의 중복 차감 우려 차단

종전까지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금을 정보통신

3) 제27조(진단보고)

4)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5) 제7조(진단불능)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되, 출자금이 압류되거나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출자금(유가증권)은 대부분 받은 금액만큼 유동자산금액에서 차감되고 유동부채에는 합산되어 인정됨으로써 이 중으로 공제되어 진단될 우려가 많았다.

개정된 내용은 유가증권 평가규정에서 종전 고시에 규정하였던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금액이 부채평가시에만 반영되도록 하였다.<sup>6)</sup>

### Ⅲ. 시사점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6호, 2013. 6. 24)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업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달성하고자 그간 운영상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단자의 범위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업계의 진단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조합출자금의 담보부분에 대한 진단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6) 제17조(유가증권의 평가)

## 중소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관리실 안철모 실장(acm@kici.re.kr)

### I. 개정추진배경

201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기업을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4월 4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내용 중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지원계획”의 일환이다. 4월부터 5월까지 건설업계 및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행정예고(6. 19~7. 8) 및 규제심사를 거쳐 9월말경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고시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2014년에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sup>1)</sup>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 2013. 6. 18.



## II.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 1. 시공 및 소프트웨어분야에서의 중소기업 보호제도 현황

시공분야에서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법령 외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 개별법에서 여러 형태의 제도로 구현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분리발주제도」로서 공사발주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및 건설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건설대기업의 수주 독점을 방지하고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체 및 전기공사업체에게 직접 계약을 통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다음은 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이다. 일정규모미만의 공사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공업체에게만 입찰참여기회를 주거나<sup>2)</sup> 추정가격 262억원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의 업체와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하게 함으로써<sup>3)</sup>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물량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업체와 공동수급을 통한 기술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큰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나 전기공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건설공사 및 소프트웨어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도급하한제」이다.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추정가격 7억원 미만 공사를,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로 규정

3)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현재는 국제입찰대상공사금액이 262억원 미만에 대하여 적용하고,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동 제도의 적용의무가 없었으나,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향후에는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모든 시·도와 시·군·구가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시행하도록 하되 외국기업이 262억원 이상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의무공동도급에서 제외할 계획임(2013. 7. 1)

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공사의 입찰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일정규모 미만의 입찰에서는 중소기업만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이상인 업체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토건, 토목, 건축공사에 입찰에 있어서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이하의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sup>4)</sup>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40억원 미만의 사업체 참여가 제한된다.<sup>5)</sup>

## 2. 해외의 중소기업 보호 사례

해외의 주요선진국에서도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차원에서 “연방조달규정”과 “중소기업법”에서 다양한 중소기업보호제도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중소기업 발주 목표치 설정」 제도이며, 이 제도는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에게만 참여기회를 주는 입찰물량을 정하고 정부기관 및 지방정부가 이에 맞추어 시행하는 제도이다. 「Set Aside제」는 10만달러 이하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발주청별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담당관과 조정을 거쳐 발주함으로써 최대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입찰우대제도」는 연방정부발주공사시 중소기업에게 입찰가격의 10%까지 우대하거나 가점을 주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소규모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Teillose)하거나 업종별로 분리하여 발주(Fachlose)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5만유로 미만의 공사는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하여 지역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보하여 주고 있다.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6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2012. 9. 3.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대상공사를 감안, 동 고시의 적용대상은 국가발주공사는 87억원 미만, 지자체·공기업 등의 발주공사는 2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7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2012. 4. 26.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참여 기회를 주는 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건의 공사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분할발주제도, 지역제한 입찰이나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등급별로 유자격 업체를 정하여 소규모공사는 낮은 등급의 업체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있다.

### 3.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먼저 적용대상 업종이 토건 1개 업종에서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을 포함한 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행정예고안에서는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sup>6)</sup>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대상공사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토건·토목·건축공사에서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가 포함된 5개 공사로 확대된다.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대상업체는 토건, 토목, 건축업종은 현행 토건업종의 규제 대상업체기준인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이상업체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경 및 산업·환경설비 업종은 시공능력평가액의 상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적용된다.

법률명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대상 업체	현행	시평액 1,200억원 이상				
	개선	시평액 1,200억원 이상	시평액 1,200억원 이상	시평액 1,200억원 이상	시평액 41,000억원 이상	시평액 1,800억원 이상
대상 공사	현행	○	○	○		
	개선	○	○	○	○	○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을 종합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등 29개 업종을 전문공사업으로 규정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대상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하한금액은 시공능력 평가액의 100분의 1로 하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최고 200억원미만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과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토건·토목·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현행 토건업종 제한수준을 유지하여 200억원 이상 공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토건·토목·건축공사에 대한 규제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sup>7)</sup> 산업·환경설비는 180억원, 조경공사는 20억원으로 상한을 설정하였다.

법률명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현행	200억원				
개선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180억원	20억원

### III. 시사점

국토해양부는 이번 고시가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9,500억원('11년 공사 실적기준 추산)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고시가 정보통신공사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대기업 계열사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시장인 키폰, CCTV, 교환기 등의 판매 및 설치 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11년 전체정보통신공사 311,609건중 1억원미만 공사가 전체 94.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공사시장에서도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도입마련이 시급하다.<sup>8)</sup> 다만 제도도입시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금액기준을 신중한 검토를 거쳐 마련하여야 하며, 현행 시공능력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공사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평

7) 현재 토건·토목·건축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200억원 기준은 전체 공사의 30% 수준이며, 산업·환경설비와 조경업종에서도 전체 공사의 30% 수준인 180억원과 20억원을 적용한다는 것임  
 특히,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공사의 비중이 높은 조경업종에 대하여 200억원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공공공사의 상당부분이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3월에 정부에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음



가하고 발주자들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신뢰하고 공사를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자료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 2013. 6. 18.
- [2]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 7. 1.
-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6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2012. 9. 3.
-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7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2012. 4. 26.

## 「전선공동구 특별법」 제정 추진 동향

기획관리실 안철모 실장(acm@kici.re.kr)

### I. 추진배경

지중화사업은 전주위에 가공(架空)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력·통신·방송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간에는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문제 등으로 지중화사업이 지자체 및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시행되어 지중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였으나, 지난해 11월 3일 개최된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중선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10년내 전국에 산재한 1,274만기의 전주에 복잡하게 설치된 공중선이 순차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sup>1)</sup>

이와는 별개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회(이장우 의원)주관으로 가칭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월 28일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1)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미래부, 공중선 종합정보 DB구축·운영”, 2013. 6. 26  
동 자료에서는 1단계('13~'17년)로 인구 50만 이상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을 정비하고, 2단계('18~'22년)에는 중소도시 지역을 정비할 예정임을 발표



## II. 지중화 사업의 개요

### 1. 지중화 필요성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구축」을 들 수 있다. 전선의 지중화를 통해 보도를 넓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유모차,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보행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도심의 지중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뒤처지며, 주요 도시별 배전선로 지중화율 역시 선진국 대 도시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표 1> 주요 국가별 도심부 배전선로 지중화율<sup>2)</sup>

구 분	한국('11)	미국('05)	영국('03)	프랑스('06)	일본('05)	독일('83)
지중화율(%)	14.7	31.0	45.0	34.0	9.3	57.0

<표 2> 주요 도시별 도심부 배전선로 지중화율

구 분	서울('11)	뉴욕('05)	런던('03)	파리('06)	동경('05)	옌센('83)
지중화율(%)	54.8	72.2	100	100	86	100

다음은 「도시경관의 향상」이다. 지상에 난잡하게 설치된 전선류가 지중화되어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이 가능하며, 지역의 관광진흥 및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해의 방지」에 지중화가 기여한다는 것이다. 태풍, 지진 등의 재해 발생시 전주의 전도, 전선의 낙하 등의 위험이 제거되며, 긴급차량의 통행확보가 가능한 등 지중화는 도시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공중선정비 및 지중화를 통한 공사업활성화방안연구”, 2013. 5.

마지막으로 지중화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전선류의 지중화는 정보통신, 전력화의 피해를 경감하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 2. 공중선 및 전주 현황

국내의 통신·방송용 공중선 및 전주는 공중선 172,110km 및 전주 4,274,000기이며, 이중 한전의 전주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공중선은 167,294km, 전주는 3,346,000기로서 공중선은 전체의 약 97%, 전주는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KT의 경우 대부분 자가 전주를 이용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임대비율은 1%미만), KT이외의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한전 전주를 임대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공중선 및 전주현황<sup>3)</sup>

구 분		전력선	통신·방송선					계
전체	공중선	438,921	172,110(137,294)					611,031
	전 주	8,464,000	4,274,000(3,346,000)					12,738,000
구 분		한 전	KT	LGU <sup>+</sup>	SKT	SKB 등	CATV사	계
사업자별	공중선	438,921	162,848 (1,930)	609 (141,865)	2,927 (81,053)	5,416 (32,937)	310 (125,570)	611,031 (167,294)
	전 주	8,464,000	4,071,000 (39,000)	13,000 (2,837,000)	65,000 (1,621,000)	119,000 (659,000)	6,000 (2,511,000)	12,738,000 (3,346,000)

## 3. 해외사례

### 가. 영국

영국은 전기공급 초기에는 가공선과 지중선이 거의 50%씩 건설되었으나, 도시형성 과정에서 지중화 장점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중선 공급이 추진되었다. 지중선건

3)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공중선정비 및 지중화를 통한 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5.



설 초기에는 관로방식으로 맨홀 등이 설치되었지만 재굴착이 불가능한 런던 등 대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관로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인 높은 건설비용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 매설방식으로 설치되었다.

#### 나. 독일

독일은 전기공급이 시작된 초기부터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여건과 공중의 안전을 고려하는 사회구조적인 시스템이 고려되어 지중화가 추진되었다.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건물의 형상과 외벽을 복원, 보전하기 위한 수요로 인해 가공설비의 설치가 제약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중화로 전선이 설치되었다. 지중화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전반에 도시의 미관 및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청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중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 다. 미국

미국은 지중화에 필요한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의 문제로 지중보다는 가공으로 공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다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미화가 고려되어 지중화가 이루어졌으며, 1975년 이후에는 신흥주택 지역에서 가공선로를 건설하지 않고 있다.

#### 라. 일본

일본은 1983년부터 가공선의 지중화를 위한 '무전주화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1995년 「전선공동구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지중화가 추진되었다. 제1기 전선류 지중화계획기간(1983~1990) 동안에는 주로 전력수요가 높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가 이루어졌으며, 제2기 및 제3기 전선류 지중화계획기간(1991~1998) 동안에는 지방도시, 경관지구 등으로 지중화가 이루어졌다. 신전선류 지중화계획기간(1999~2003)에는 중규모상업지역과 주택지역까지 지중화가 이루어졌으며, 무전주화 추진계획기간(2003~2008)에는 간선도로까지 지중화가 이루어졌다.

<표 4> 해외 지중화 사업비 부담률 현황<sup>4)</sup>

구 분	비 용 부 담 율			비 고
	국가	지자체	전력회사	
일 본	33%	33%	34%	
캐나다		66.7%	33.3%	
프랑스		100%		도시계획: 지자체 기 타 : 수용자
독 일			100%	
호주, 스페인		100%		
미국	플로리다	75%	25%	
	하와이	66.7%	33.3%	
	버지니아			전력요금에 부과

### Ⅲ. 전선공동구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 1. 총칙

- (목적) 전선공동구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전기 등을 공급하고 쾌적한 국토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 (정의)
  - “지상전선”이란 배전선, 전기통신선, 유선방송선 등 전주에 의하여 연결되는 선로를 말한다.
  - “전선공동구”란 지상전선을 지중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점용시설”이란 전선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전선공동구 내에 설치하는 배전선 및 전기통신선을 말한다.

4) “전선공동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13. 6. 28.



- “점용예정자”란 전선공동구 설치 전 지상전선을 설치·관리하는 자로서 방송사업자, 전기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을 말한다.

## 2. 계획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부장관은 지상전선의 체계적인 지중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초조사를 통해 목표·방향, 지중화현황, 설치·관리계획, 자원 확보 등을 제시하며,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시·도지사 및 도로관리청에 기본계획을 통보(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 (실행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목표·방향, 노선별 설치 우선순위, 설치·관리계획, 설치비용 및 자원조달방안, 단계별 계획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
- (점용허가 제한) 도로관리청은 전선공동구 예정구간에 설치 우선순위 및 시기를 고려하여 지상전선의 도로점용제한 가능

## 3. 설치 및 관리 등

- (실시계획) 도로관리청은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내용·규모, 착(준)공일 등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실시계획 작성
- (설치·관리) 전선공동구는 도로관리청이 실시계획 수립 후 보도 지하에 설치하며, 점용예정자(한전, 통신사 등)가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후 지상전선을 기 설치된 전선공동구에 설치 후 전주 철거
  - 전선공동구는 도로관리청, 점용시설은 해당 점용자가 각각 관리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규정을 제정·운영
- (점용허가) 도로관리청은 전선공동구 설치 완료 후 점용예정자에게 점용허가 통지
- (시설기준) 국토부장관은 전선공동구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설치·유지관리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전선공동구 및 점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을 마련

- (점용시설의 이전명령 등) 도로관리청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부득이한 경우 점용자에게 점용시설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
- (전선공동구협의회) 전선공동구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협의조정기구로서 도로관리청, 점용예정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4. 비용부담 등

- (설치비) 전선공동구 설치비용은 도로관리청과 점용기관이 분담
- (관리비) 시설물소유자가 관리
  - 전선공동구는 도로관리청, 점용시설 및 지상기기 등은 점용시설 소유자가 관리
- (사용료) 새로이 전선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점용면적에 따라 사용료 부담
  - 사용료는 점용비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징수하며, 유지관리·개축에 사용하여 도로관리청의 비용절감 유도
  - 점용시설의 지중화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점용자의 부담경감
  - 점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감면 규정
- (보조·용자) 국가는 전선공동구의 설치·촉진을 위해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용자
- (특별회계) 도로관리청은 설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운영
- (시범사업) 국토부장관은 전선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 지정 및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

## IV. 시사점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안전, 정보통신네트워크의 품질제고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공물량창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2013년도 공중선 정비대상 및 정비물량

지자체	정비대상		정비물량			
	정비구역	정비구간	한전주	통신주	소 계(기)	케이블거리(m)
서울	162	862	8,740	5,554	14,807	1,085,806
부산	58	152	4,758	5,246	10,004	779,387
인천	85	181	14,686	13,806	28,492	2,586,043
대구	9	9	1,960	2,188	4,148	434,576
대전	5	5	5,258	3,735	8,993	854,764
광주	18	52	18,642	4,936	23,578	439,002
울산	27	247	7,194	1,351	8,545	733,643
창원	5	11	3,647	3,333	6,980	1,410,333
수원	1	15	4,186	-	4,186	507,315
성남	4	28	1,775	-	1,775	136,415
고양	1	4	110	-	110	3,851
용인	3	9	1,395	34	1,429	58,715
부천	31	658	11,707	-	11,707	277,221
안산	7	28	5,644	-	5,644	183,885
청주	4	4	2,880	480	3,360	215,216
전주	8	8	2,298	432	2,730	176,778
안양	2	2	1,206	32	1,238	174,173
남양주	26	95	5,890	-	5,890	247,672
포항	1	32	1,382	210	1,592	46,828
천안	2	26	919	561	1,480	74,177
총계	459	2,428	104,277	41,898	146,688	10,425,800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논의된 「전선공동구 특별법제정안」은 실제 공포시까지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조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절차가 완료되고 공포될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중선지중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공중선 지중화사업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업계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업계의 물량창출이 이루어 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자료

- [1]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공중선정비 및 지중화를 통한 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5.
- [2]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어지러운 공중선, 본격 정비에 나선다”, 2012. 11. 23.
- [3]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미래부, 공중선 정비사업 권역별 현장설명회 개최”, 2013. 5. 13.
- [4]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미래부, 공중선 종합정보 DB 구축·운영”, 2013. 6. 26.
- [5] 공청회 자료, “전선공동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3. 6. 28.



##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

기획관리실 안철모 실장(acm@kici.re.kr)

### I. 개 요

정부는 지난 6월 1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sup>1)</sup>

이는 건설산업에서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등의 피해사례가 상존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소개를 통해 건설산업현장보다 훨씬 열악한 시공환경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공사분야에서도 관련 제도나 정책의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관행 뿌리 뽑는다”, 2013. 6. 14.



## II.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 주요내용

### 1. 제도개선방안

#### 가. 불공정하도급 일천 차단(원도급자-하도급자 관계)

##### (1)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제고

###### ○ 불공정 하도급계약 무효화 추진

현재 하도급계약시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위반업체의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적으로 무효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3/4 분기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 의무화

현재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만을 단순하게 통보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점검규정이 미비하여 불공정 하도급방지에 무력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서를 점검토록 하고 불공정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미이행시에는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토록 개선될 예정이다.

(2)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 지원

○ 저가낙찰공사 발주자 직불 의무화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이 체불되거나 보증서가 미발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 직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저가낙찰시<sup>2)</sup> 발주자가 직불토록 행정지도(2013. 4. 26 기조치)하고 향후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통해 모든 공공공사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현재 원도급업체의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으나, 공사진행중 신용이 하락하여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도급자가 보증서 발급사실을 은폐하거나 보증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이를 알지 못하여 하도급대금의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향후에는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공사도중 A등급 이하로 강등되어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보증서의 발급·변경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발급·변경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예방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 예정가격의 82% 미만으로 낙찰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령 개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대금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기준을 종전 4천만원 이하 공사에서 1천만원 이하 공사로 축소하였으나, 하도급법령은 4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강화된 내용이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하도급법령개정을 추진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기준을 1천만원 이하 공사로 통일할 예정이다.

○ 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B2B) 제도개선

현재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하도급자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원도급자가 미상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하도급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보증기관의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하도급업체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건설업도 매출채권보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시 보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은행에 상환토록 보증금 지급절차를 개선하며, 원도급업체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유예토록 개선될 예정이다.

(3)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보완

○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 강화

현재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불공정하도급업체에게 감점을 주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업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단순 가·감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가·감점이 되어도 타 항목에서 상쇄되어 심사결과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하다.

향후 PQ심사기준에서의 하도급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인센티브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현재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위해 전문업체도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중이나,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향후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사업으로 발굴·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생산단계 축소를 통한 적정 하도급공사비 확보

현재 종합업체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어 생산단계가 늘어남에 따른 공사금액이 누출되어 실제 시공비용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행정지도(2013. 4. 26 기조치)하고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공사에서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현재 원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될 우려가 있다.

향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을 법정화하여 원도급업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한 하자책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 엔지니어링분야 하도급 양성화

현재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분야는 하도급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향후 건설기술관리법에 엔지니어링 하도급계약관리 및 업체보호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하도급 질서 및 수평적 협력관계가 형성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나.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 보호 강화(하도급자 - 근로자 - 장비업자 관계)

(1)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현재 건설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임금지급이 곤란한 경우와 민간공사의 경우는 아직도 임금 체불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 근로자임금 우선변제제도 도입

현재 원도급업체 법정관리 신청시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회생채권(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변제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신청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임금도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2) 건설장비업자 대금보호 강화

○ 장비대금 지급 보증제 시행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장비대금 직불제도와 지급확인제도를 통해 대금지급을 담보하고 있으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여 장비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013. 6. 19부터 시행).

다.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발주자-원도급자 관계 등)

(1) 민간발주 공사에서의 공정한 계약 보장

○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보호

현재 민간 건설공사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체불, 지연지급 등에 대해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민간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이행보증요구시 건설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 건설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 무효화

현재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건설업체에 피해가 발생해도 계약조건을 당사자간 합의사항임을 이유로 건설업체의 피해구제가 곤란한 현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체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효력을 무효화



하도록 규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2) 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분 반영

-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 지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간접비 등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필요 여부, 구체적 정산방식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3) 중소건설업체 보호 강화

-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업종 확대

대·중소기업간 수주격차 완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형업체 참여를 제한중이나,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향후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소규모 공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2013. 6. 19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2. 제도의 집행력 강화방안

### 가. 제도이행실태 점검체계 구축

- 5개 지방 국토청, LH 등 국토부 산하 4대 공사, 관련협회(전문, 설비, 시설물유지관리)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설치·운영
  - 관할지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불공정계약, 대금체불, 보증서 미발급 등 각종 불공정 실태를 조사하고 범위반자는 강력 제재
- 국토부는 지방 국토청, 4대 공사, 협회에 설치된 세넬의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이행 실태를 종합점검·파악

### 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면 즉시 절차를 개시하여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하고,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의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한다.
- 분쟁조정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정절차를 비

공개하며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 중단 등 제도를 보완한다.

다. 공사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

- LH 등 국토부 산하 4대 공사 중심으로 각종 공사대금 지급상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년중 시범사업 추진
- 미지급·지연지급 업체는 처분청에 통보하여 제재 처분

### Ⅲ. 시사점

이번에 마련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은 경제민주화 및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우선시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근로자 및 장비업자로 이루어지는 건설산업의 생태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불공정관행들의 대부분은 정보통신공사현장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들은 정보통신공사에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한 「정보통신공사법령」에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보통신산업동향

제4권 13-02호

---

**발행일** 2013년 7월 15일

**발행인** 함정기

**편집인** 서병기

**발행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도림동)

TEL: (02)2011-0100 FAX: (02)752-3060

<http://www.kici.re.kr>

---